

1. 개정이유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반시설인 공항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비탈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확대(안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제15조의2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에 따른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2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660제곱미터 이상 산지로 확대하고,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용어 정비(안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24조, 제30조, 제34조, 별표 3,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산지전용·일시사용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

처리계획으로 변경하여 석재에 대한 처리계획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다. 산지전용허가 비탈면 기준 정비(별표 1의3, 별표 6)

공항 건설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직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비탈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복구설계서 승인 기준을 개선함.

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 정비(별지 제9호의2서식)

산지보전협회 외에 사방협회에서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에 반영되지 않아 사방협회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4. 19. ~ 5. 31.) 결과,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동일한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내에서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한다]”를 “1부.”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제2호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②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0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 및 카목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제4항제2호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토사처리계획”을 각각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제34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토사처리계획”을 각각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별표 1의3 제2호다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 단서 중 “도로·철도·댐·저수지”를 “도로·철도·댐·저수지·공항”으로 한다.

7) 공항

별표 3 제1호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저수지는”을 “저수지·공항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동일한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합니다) 내에서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결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를 “1부.”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동일한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합니다) 내에서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결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를 “1부.”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

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1)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앞쪽 중 “한국산지보전협회장”을 “한국산지보전협회장, 사망협회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및 같은 호 가목 중 “토사처리계획”을 각각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및 같은 호 가목 중 “토사처리계획”을 각각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 및 같은 란 제2호가목 중 “토사처리계획”을 각각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2호다목3) 중 “가목 및 나목”을 “1) 및 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② ----- ----- -----.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 ----- -----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u>토사처리계획</u>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가. ----- ----- ----- ----- ----- <u>토석처리계획</u> ----- -----
나. ~ 자. (생략)	나. ~ 자. (현행과 같음)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별지 제4호	차. ----- ----- ----- ----- -----

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u>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동일한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내에서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결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한다</u>] <단서 신설> 카. (생략) 2. 3. (생략) ③ (생략)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	----- 1부.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카.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u>토사처리계획</u>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 5. (생략) ⑤ ~ ⑦ (생략) 제13조(산지전용신고) ①·② (생략) ③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u>토사처리계획</u> 등 사업계획의 변경 3. ~ 6. (생략) ④·⑤ (생략)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 1. (현행과 같음) 2. ----- ----- <u>토석처리계획</u> ----- --- 3. ~ 5.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산지전용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 -- <u>토석처리계획</u> ----- ----- 3. ~ 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	--	---	---

(생 략) <신 설>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이용계획 및 <u>토사처리계획</u> 등 사업계획의 변경 3. ~ 5. (생 략) ③ (생 략)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u>”란 제10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 및 카목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토석처리계획</u> ----- 3.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의 이용계획 및 <u>토사처리계획</u> 등 사업계획의 변경 3. ~ 6. (생 략) ⑤ ~ ⑧ (생 략)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 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토석처리계획</u> ----- 3. ~ 6.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 ----- ----- ----- ----- ----- ----- ----- ----- ----- ----- ----- -----
---	---	--	--

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 재에 한정한다), <u>토석처리 계획</u>(석재에 한정한다), 연 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나.·다. (생략) 2. 무상양여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 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 재에 한정한다), <u>토석처리 계획</u>(석재에 한정한다), 연 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나.·다. (생략)	----- ----- ----- <u>토석처리계</u> <u>획</u>----- ----- ----- - 나.·다. (현행과 같음) 2. ----- 가. ----- ----- ----- ----- <u>토석처리계</u> <u>획</u>----- ----- ----- - 나.·다. (현행과 같음)
--	---